

임실군 의회 공고 2026 - 2호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 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진 이상동기 범죄 등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라.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실군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임실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

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임실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 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지원 사업
3.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
4.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6.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7.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임실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